발전노동자

키우자, 전력산업 공공성 / 만들자, 좋은 일자리

244호 2017.07.03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

정권교체와 발전노조의 비전

③공기단축, 휴일노동을 철폐해야 노동자의 삶이 바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반발 이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사회적인 생계비 수준으로 지급한다.(임금을 노동력 재생산의 최저비용 수준으로 낮추려는 자본의 의도)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이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면 사용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불노동은 증가하게 된다.

〈노동시간 연장〉

지불 노동 (Paid work)	부불 노동 (Unpaid work)	: 8시간 노동
지불 노동 (Paid work)	부불 노동 (Unpaid work) ≧	: 10시간 노동

〈노동강도 강화〉

지불 노동 (Paid work)	부불 노동 (Unpaid work)	: 8시간 노동
지불 노동 (Paid work)	≦ 부불 노동 (Unpaid work)	: 8시간 노동 (성과연봉제)

※ 부불 노동(Unpaid work) = 잉여 가치, 잉여 노동

임금교섭의 목적은 총 노동시간 중 잉여노동 시간의 상대적인 범위(비율)를 축소하기 위한 것, 즉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윤 몫이 아니라 임금 몫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

자료 1. 자본 측 이윤 극대화를 위한 방법

발전현장의 연장 근로 우리 발전현장에서 52시간, 68시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는 노동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모든 공사는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감독원을 공사의 안전을 위해, 바른 작업을 위한 의무감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게끔 내몰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 신청조차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발전현장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법적인 지급여부를 판단할 뿐, 우리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모순의 공사기간 하에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고용효과 측면에서 의미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노동시간 단축, 계획예방정비공사 표준공기 재 산정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연장•야간 및 휴일 등의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발전노동자가 긴급복구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까지 시간외 근로를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다. 계획예방정비공사(Overhaul)부터 시간외 근로를 제외하여 표준공사기간을 재 산정,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어 이 땅의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7년 발전노조 교섭 요구안 (노동 관련)

- 계획예방정비공사 공사기간 단축 금지 / 표준공기 확대
- 교대근무 겸직 폐지 / 5조3교대로 근무형태 개선
- 부족인력 충원 (교대근무 축소인원 회복 / 설비부서 / 육아휴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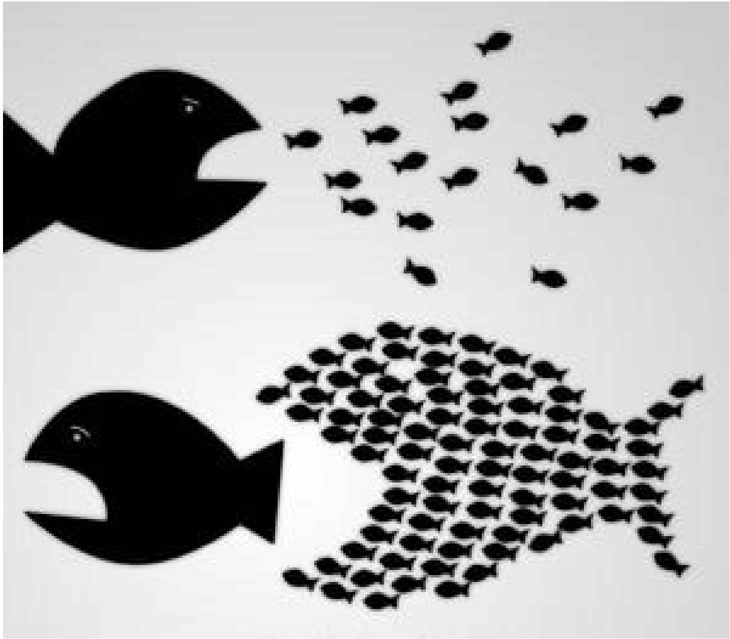

Union is strength.